

무등록 위장농약의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병해충 방제효과 없고 농업인 부담만 가중

병해충·잡초방제효과 있으면 정식 농약으로 등록해야
시중 유통자재 난립, 관련기관의 강력한 단속 있어야

- 홍보부 -

최근들어 액비(제4종 복비)나 부산물 비료 중 토양미생물제제 등이 병해충방제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가 하면 이들 제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단속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자재들은 특정 병해충 이름을 적시, 마치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직접 광고하거나 특정매체의 이름을 빌려 허위 광고함으로써 이를 믿고 사용한 농업인의 피해는 물론 농약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농업인의 신뢰, 실농으로 이어져

실제로 미생물 제제라는 용어는 비료관리법상에 부산물비료 중 토양미생물제제와 토양활성제 비료로 구분되어 있다. 즉 비료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재들이 마치 농약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것처럼 위장,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비료관리법상에서의 비료의 정의를 보면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즉, 어디에도 병해충 방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과대 허위광고 내용을 믿고 농약대신 이 같은 자재를 살포한 후 병해충이 방제되지 않아 1년 농사를 망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안동시의 최숙자씨는 서울에서 귀향하여 2002년도 첫해에 3천평에 이르는 고추 농사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었다. 최씨는 그러던 중 소위 미생물제제가 친환경적이고 병해충 방제도 잘 된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액비와 미생물제제만을 살포하고 농약은 전혀 살포하지 않았다. 다행히 생육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되어 있었고 소득에 대한 기대 또한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7월의 장마가 끝나고 풍요한 기대를 갖게 해준 고추에는 역병, 탄저병이 만연하였고 결국 최씨는 농약으로 방제할 시기도 일실함으로써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3월부터 4~5개월간 고생한 보람도 없이 실농하고 만 것이다.

일본, 소비자 신뢰회복 위해 큰 댓가 치뤘

여기서 위장농약이나 무등록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한때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2년 7월 일부의 업자가 무등록농약을 수입 판매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제품들은 전국적으로 44개 행정구역에서 약 2백 70여개 업자를 통해 디포라탄 등 10종류의 무등록 농약이 4천호 농가에 판매된 사실

이 판명되었다.

이 결과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수 농민의 마음의 상처 또한 매우 컸다.

결국 무등록 농약을 사용한 산지의 과일이 일부 점포에서 철거되거나 반품되었고 또한 사과 값의 폭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야마카타현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살포과수원은 물론이고 인접한 과수원도 경계에서 8m전후까지 과실을 전부 따서 소각처분 하는 등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였다.

정부 당국에서는 무등록농약이 수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무등록농약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판매되지 않도록 농약관리법의 벌칙을 한층 강화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등록농약의 제조 및 수입금지 △수입대행업자의 광고 제한 △무등록농약의 사용규제 △벌칙 강화 등이다. 특히 법인의 판매 등에 관계된 의무 위반은 최고 1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도 1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기농업 자재나 천연물이라고 말하면서 합성농약이 혼합되어 있는 것 등은 특정농약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환경성 및 농림성 합동으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작업자 및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 2천7백여개에 상당하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농약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광고한 농업자재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업인 위해 강력단속 이루어져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료의 허위·과장표시 및 광고시 해당하는 벌칙을 보면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2항에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양도·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99. 3. 31 개정)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월로 규정되어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9-19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중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보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

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대 허위표시로 포장된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미생물제제들은 생육 및 수량, 토양, 작물피해에 관한 시험만을 하게 되고 농약과 같이 약효·약해시험 및 각종 급·만성 독성시험이나 토양·작물·수중잔류시험과 같은 안전성 시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제품이 각종 병해충이나 잡초방제에 효과가 있다면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성시험을 실시하고 정식으로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후 판매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업인을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검증되지 않은 농자재나 무등록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당사자들의 올바른 의식전환과 함께 관련기관의 철저한 단속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DDA농업협상 및 FTA 등으로 벼랑 끝에 선 우리 농업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일 것이다. **농약정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률	시 행 령
<p>제정 1999. 2. 5. (법률 제5814호)</p> <p>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p> <p>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p> <p>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p> <p>제1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 등</p>	<p>제정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0호)</p> <p>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p> <p>제4조(실증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함에 있어서 시험이나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p> <p>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p> <p>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이를 행할 것. 다만,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 또는 사업자 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 의한 시험·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